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11
----------	-----

2021. 9. 7.(화)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수완 의원

나. 발의일자: 2021년 8월 25일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2021년 9월 3일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수완 의원)

### 가. 제안이유

-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정의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 경제교육시행계획 수립 (안 제4조)
-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안 제5조)
- 교원연수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 시행규칙 (안 제8조)

### 3. 검토보고 요지

####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경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경제지식 습득,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예방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에는 경제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 고금리 소액 대출의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제교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경제교육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경제지식 습득 및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
2.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
3.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

② 교육감은 경제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6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 2017. 12. 26.] [법률 제15283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4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292호, 2020. 5. 19., 타법개정]

**제30조(금융교육)**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5조에 따라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안 제6조에 따라 교원연수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